

의안번호	2207986
의 퇴 인	김태호 의원
회 답 일	2025.04.07.
추 계 번호	25C072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39억 400만원, 2030년 936억 7,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531억 5,000만원(연평균 906억 3,0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	56,175	51,704	52,959	54,226	56,042	271,105	54,221
1일 2회 이상 급식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	37,729	34,717	35,560	36,410	37,630	182,045	36,409
합 계	93,904	86,421	88,519	90,636	93,672	453,150	90,630

주: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는 관련 법령 등을 참조하여 36학급 이상인 학교로 함

3. 1일 2회 이상 급식 학교에 배치하는 영양교사는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국·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임

4. 두 조건이 중복되는 학교는 없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결과이므로 실제 현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2항) 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서에서는 ①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②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영양교사 추가 배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인건비,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의 합으로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 비용으로 함
- 현행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와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각각 영양교사가 1명씩 추가 배치된다고 가정
 - 두 조건을 중복으로 만족하는 학교는 없으며, 영양교사가 배치되는 학교의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
 -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6년에 영양교사를 일괄 충원하여 배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일정 규모 학교에 대한 구체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학교보건법」의 유사 조문을 참조하여 36학급 이상의 학교로 가정
 -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를 36학급 이상의 학교로 규정함
 - 참고로, 제21대 국회 당시 유사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해당 의안은 제안이유에서 영양교사 배치의 기준으로 36학급 이상인 학교를 제시한 바 있음¹⁾

1) 의안번호 제2120470호

-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배치되는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학급 수별 학교 수 통계가 존재하는 초·중·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추계
 - 참고로,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이 있음
 -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배치되는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국·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추계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36학급 이상인 학교에 영양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는 비용을 산출
- 추가재정소요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인건비,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의 합이고,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 비용임
- (1) 국·공립학교 영양교사 인건비
- 영양교사 신규 충원에 따른 인건비는 임금, 수당 및 기관부담금으로 구성됨
 - 임금과 수당은 신규 채용 영양교사의 수에 봉급 및 수당을 곱하여 산출
 - 기관부담금은 임금과 수당을 합한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 요율 전망치를 곱하여 산출
 - (영양교사의 수) 국·공립학교에 신규 채용되는 영양교사의 수는 '24년 기준으로 36학급 이상인 국·공립학교 수와 같다고 가정
 - 영양교사가 배치되는 학교의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

[표 2] 국·공립학교에 신규 채용되는 영양교사의 수

(단위: 명)

구분	초	중	고	합 계
국립	—	—	4	4
공립	924	131	149	1,204
합 계	924	131	153	1,208

자료: 교육부 통계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임금) 교육공무원의 봉급을 준용하되, 신규 임용되는 영양교사(2급)의 기산호봉이 8호봉임을 고려하여 2026년 8호봉에서 매년 1호봉씩 상승한다고 가정
 - 영양교사 1급 자격은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년 이상 근무해야 취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되는 영양교사는 전원 2급으로 하고, 추계기간 동안 해당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봉급은 추계기간 동안 매년 최근 3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인 1.9%만큼 상승한다고 가정
- (수당)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영양교사 수당, 교원연구비로 구성되고, 「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기준」을 참조하여 1인당 월 50만 5,000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일정함을 가정
- (기관부담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의 합으로 하며, 임금과 수당을 합한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 요율 전망치를 곱하여 산출

[표 3] 인건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임금	28,431	29,475	30,318	31,159	32,376	151,760	30,352
수당	6,060	6,060	6,060	6,060	6,060	30,300	6,060
기관부담금	4,507	4,666	4,800	4,945	5,143	24,060	4,812
합 계	38,998	40,201	41,178	42,164	43,579	206,120	41,2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4] 국·공립학교 영양교사 인건비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임금	34,345	35,606	36,624	37,641	39,111	183,326	36,665
수당	7,320	7,320	7,320	7,320	7,320	36,602	7,320
기관부담금	5,444	5,636	5,798	5,974	6,212	29,064	5,813
합 계	47,110	48,562	49,743	50,935	52,644	248,993	49,7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국·공립학교 영양교사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 (기본경비) 신규 채용 영양교사의 인건비에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른 인건비 대비 물건비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자산취득비) 영양교사를 신규 충원하는 2026년에만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국·공립학교에 신규 채용되는 영양교사의 수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1인당 자산취득비를 곱하여 산출

[표 5] 국·공립학교 영양교사 기본경비·자산취득비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기본경비	2,933	3,022	3,094	3,165	3,269	15,483	3,097
자산취득비	6,017	—	—	—	—	6,017	1,203
합 계	8,950	3,022	3,094	3,165	3,269	21,500	4,3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사립학교 영양교사 국가부담금

- 사립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영양교사의 보수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산출
- (보수) 임금과 수당으로 구성되며 국·공립학교 영양교사와 유사하게 산출
 - 영양교사의 수는 '24년 기준으로 36학급 이상인 사립학교 수로 하고, 임금과 수당은 국·공립학교 영양교사의 인건비 단가를 준용함

[표 6] 사립학교에 신규 채용되는 영양교사의 수

(단위: 명)

구분	초	중	고	합 계
영양교사의 수	1	2	88	91

자료: 교육부 통계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가부담금 비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²⁾ 및 동법 시행령³⁾에 따라 국가 부담금 비율은 3.706%로 함

[표 7] 사립학교 영양교사 국가부담금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보수 ¹⁾ (A)	3,139	3,234	3,310	3,387	3,498	16,567	3,313
임금	2,587	2,682	2,759	2,836	2,946	13,810	2,762
수당	551	551	551	551	551	2,757	551
국가부담금 (B=Ax부담비율 ²⁾)	116	120	123	126	130	614	123

주: 1) 보수는 봉급과 수당의 합으로, [표 3]의 국·공립 영양교사 인건비 단가를 준용하여 산출

2) 부담비율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706%를 적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추계결과

- 36학급 이상인 학교에 영양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61억 7,500만원, 2030년 560억 4,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711억 500만원(연평균 542억 2,100만원)으로 추계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4조(개인부담금) 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표 8]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영양교사 배치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인건비	47,109	48,562	49,742	50,935	52,643	248,991	49,798
봉급	34,345	35,606	36,624	37,641	39,111	183,326	36,665
수당	7,320	7,320	7,320	7,320	7,320	30,300	6,060
기관부담금	5,444	5,636	5,798	5,974	6,212	29,064	5,813
기본경비	2,933	3,022	3,094	3,165	3,269	15,483	3,097
자산취득비	6,017	-	-	-	-	6,017	1,203
국립학교 소계	56,060	51,584	52,837	54,100	55,913	270,494	54,099
사립학교 부담금	116	120	123	126	130	614	123
합 계	56,175	51,704	52,959	54,226	56,042	271,105	54,221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국·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의 합을 산출함

(1) 인건비

- 영양교사 신규 충원에 따른 인건비는 임금, 수당 및 기관부담금으로 구성됨
 - 임금과 수당은 신규 채용 영양교사의 수에 봉급 및 수당을 곱하여 산출
 - 기관부담금은 임금과 수당을 합한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 요율 전망치를 곱하여 산출
- (영양교사의 수) 신규 채용되는 영양교사의 수는 '25년 기준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국·공립학교의 수와 같다고 가정
 - 영양교사가 배치되는 학교의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

[표 9] 지역별 신규 채용되는 영양교사의 수

(단위: 명)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채용인원	20	61	15	15	21	31	6	21	53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채용인원	67	56	82	47	103	85	114	16	813

자료: 교육부 통계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임금, 수당, 기관부담금) 36학급 이상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산출
 - 임금은 교육공무원의 봉급을 준용하되, 신규 임용되는 영양교사(2급)의 기산호봉이 8호봉임을 고려하여 2026년 8호봉에서 매년 1호봉씩 상승한다고 가정
 - 수당은 1인당 월 50만 5,000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일정함을 가정
 - 임금과 수당을 합한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 요율 전망치를 곱하여 산출

[표 10] 영양교사 인건비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임금	23,115	23,963	24,649	25,333	26,322	123,381	24,676
수당	4,927	4,927	4,927	4,927	4,927	24,634	4,927
기관부담금	3,664	3,793	3,902	4,020	4,181	19,561	3,912
합 계	31,705	32,683	33,478	34,280	35,430	167,576	33,5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36학급 이상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산출
 - 기본경비는 신규 채용 영양교사의 인건비에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른 인건비 대비 물건비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자산취득비는 신규 채용되는 영양교사의 수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1인당 자산취득비를 곱하여 산출

[표 11] 국·공립학교 영양교사 기본경비·자산취득비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기본경비	1,974	2,034	2,082	2,130	2,200	10,420	2,084
자산취득비	4,050	-	-	-	-	4,050	810
합 계	6,024	2,034	2,082	2,130	2,200	14,470	2,89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계결과

-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77억 2,900만원, 2030년 376억 3,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820억 4,500만원(연평균 364억 900만원)으로 추계

[표 12] 1일 2회 이상 급식 실시 학교 영양교사 배치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인건비	31,705	32,683	33,478	34,280	35,430	167,576	33,515
임금	23,115	23,963	24,649	25,333	26,322	123,381	24,676
수당	4,927	4,927	4,927	4,927	4,927	24,634	4,927
기관부담금	3,664	3,793	3,902	4,020	4,181	19,561	3,912
기본경비	1,974	2,034	2,082	2,130	2,200	10,420	2,084
자산취득비	4,050	—	—	—	—	4,050	810
합 계	37,729	34,717	35,560	36,410	37,630	182,045	36,409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제외하고, 1일 2회 급식을 실시하는 사립학교를 추계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등의 가정 하에 도출한 결과로서 실제 학교 급식 현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